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53479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김해시 D 대 51㎡, E 전 168㎡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F 사이에 2021. 5. 3.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F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1. 5. 11. 접수 제36751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소유권경정합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경정등기’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는 2019. 4. 2. 원고에게 F에 대한 2018. 8. 28.자 대출금 3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9. 4. 5. F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나. F은 2014. 12. 26. 망 H 소유의 김해시 D 대 51㎡, E 전 168㎡(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를 I, 피고, J과 함께 각 1/4 지분씩 공동상속하여 2015. 5. 26. 각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이루어졌고, 2020. 2. 11. I 2/4 지분, 피고 1/4 지분, F 1/4 지분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루어져 2020. 2. 12.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고, 2021. 5. 3.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이 이루어졌고, 2021. 5. 11. 피고의 단독소유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F은 2021. 5. 3.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F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2)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상속지분인 4/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H 생존 시부터 피고가 상속하기로 구두합의가 되었으나, 이후 형제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공동등기를 하였다가, 형제들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F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F 소유의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주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주등기를 말소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따른 내용으로 경정되어

부기등기로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부기등기인 이 사건 경정등기만이 유효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1. 5. 11. 마친 이 사건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